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검토

2015. 8. 3

정재호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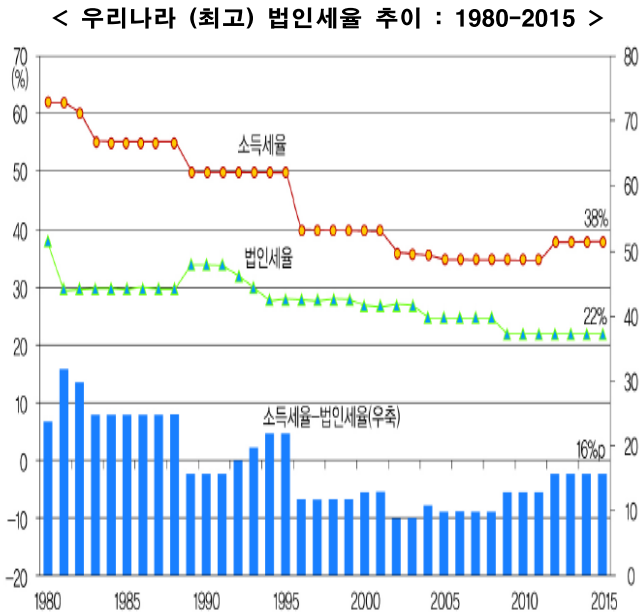
목 차

1.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천 및 국제 비교 / 1
 2. 우리나라 법인세액의 공제 및 감면 현황 / 2
 3.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對 법인세수 증대 / 3
 4. 새정연 주장의 문제점 : 법인세율 정상화 / 4
 5. 정책 대안 : 법인세 공제감면제도 재정비 / 5
- 보론 : 국제조세경쟁과 법인세율 인하 확산 / 6
-

1.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천 및 국제 비교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은 현재 22%로 OECD 평균 수준 약간 하회
- 자본이동에 따른 조세경쟁의 격화로 법인세율은 전세계적 수렴화 추세**

■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91년 이후 인하 지속 ⇒ 현재 최고세율 22%



< 우리나라 (구간별) 법인세 개정 추이 >

1996	16%, 28% 2단계	16%, 25% 2단계
	모든 과세대상 법인	조합법인
1999	16%, 28% 2단계	12%
2002	15%, 27% 2단계	12%
2005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12%
2008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5%	12%
2009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12%
20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9%
2012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12~'14) 9% ('15~)당기순이익 20억원 기준 9%/1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5.07),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법인세」

※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또한 법인세율 인하
- 상기표 □ : 김대중 정부 (1998년-2002년), 노무현 정부 (2003년-2007년)

※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 구간별 법인세율을 차등화한 누진적 세율체계
- OECD 34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 단일 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구간 수 : 8개 (미국) > 4개 (포르투갈, 벨기에) > 2개 (6개국) > 1개 (24개국)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거의 OECD 평균수준 (법인세율 인하 확산)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중앙정부 기준) 22%는 '15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 19위(높은 순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 : OECD 평균 23.19%
- 지방세 포함時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24.2% (19위) : OECD 평균 25.2%

※ '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조세경쟁의 격화로 법인세율 인하 확산
- 주요국 법인세율 인하 사례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2. 우리나라 법인세액 공제 및 감면 현황

법인세액의 공제와 감면이 급증하였음. (일단 도입한 후에는 고착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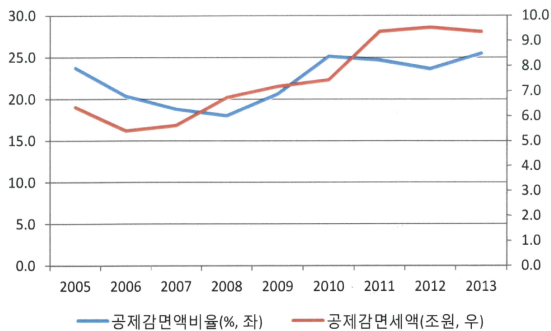
■ 법인세 감면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구성 (세액공제가 대부분)

- ※ 전반적으로 세액공제는 투자·고용 등 세부경제행위와 연계된 제도
 - 세액감면은 특정 지구, 외국인투자,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에 의존
- ※ '13년 기준 국세감면액의 84.8%가 세액공제 방식 (세액감면 방식 15.2%)
 -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방식이 39.4% (일반기업은 7.9%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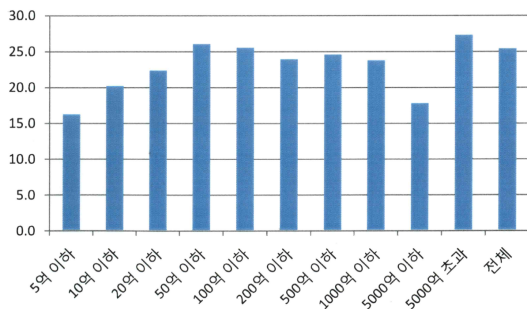
■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급증 : 5.4조원 ('06년) → 9.3조원 ('13년) 법인세 총 부담세액 대비 공제·감면세액의 비율도 유사한 추세

- ※ 자산규모 별 공제감면액 비율을 보면 5천억 초과 대기업 비율은 27.2%
 - R&D 투자, 시설 투자 등이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

< 법인세 공제감면 추이 : 2005-13 >



< 법인자산 규모별 공제감면 비율 (2013) >



* 자료 :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방안 (2015.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2013, 2014)

<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2013년 기준) >

순번	조문	감면액 (억원)
1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8,494
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7,185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6,255
4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2,261
5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593
6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분사에 대한 감면	1,210
7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871
8	환경보전 시설투자 세액공제	733
9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96
10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463
11	수도권외 지역 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	447
12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381
13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306
14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202
15	영농조합법인 감면	194

*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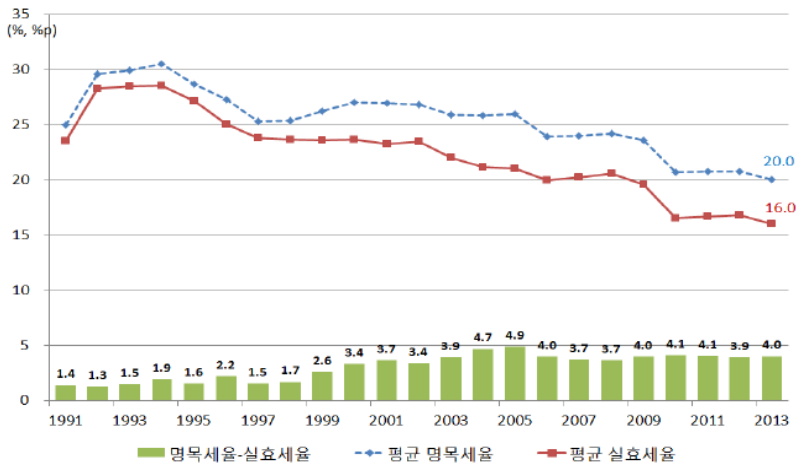
3.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對 법인세수 증대

명목법인세율의 인하 및 세액공제·감면 증가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하락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법인세수는 오히려 증가해 왔음.

■ 평균 실효세율은 '90년대 초 이후 하락 추세 ⇒ 16.0% (2013년)

※ 평균 실효세율 = 법인의 총 부담세액 / 과세표준 * 100
- (과세표준 * 명목법인세율 ↓) - (세액공제·감면 ↑)

<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과 평균 실효세율 추이 : 1991-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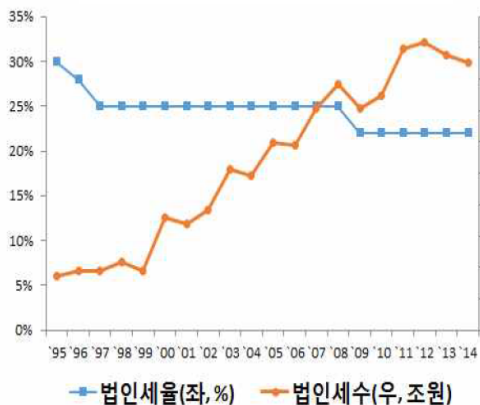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산정책처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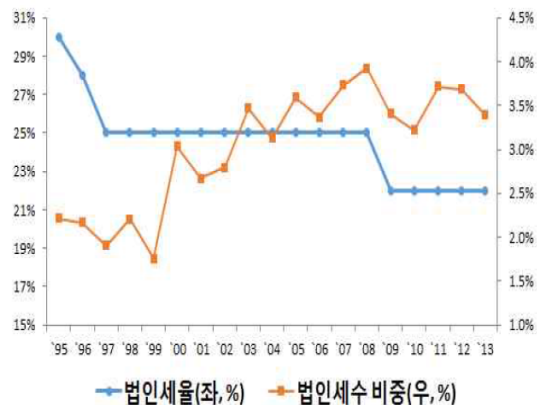
■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법인세수는 꾸준히 증가
'95년~'14년 : 법인세율 (30%→22%), 법인세수 (8.7조원→42.7조원)

<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추이 >



< 법인세율과 법인세수/GDP 추이 >



4. 새정연 주장의 문제점 : 법인세율 정상화

새정연은 추경 처리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법인세율 인상 명시화를 요구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 주장)
 - 법인세율 인상 시 재정건전성 악화, 외환금융 불안정성 증대 가능성

새정연의 주장	새정연 주장의 문제점 (반론)	
- 법인세수 확보 위해 법인세율 인상 필요	증세의 역설 : - 래퍼 곡선 - 유인 효과 * 투자↓ * 고용↓ * 성장↓ ⇒ 과세기반↓	- (증세의 역설) 세수에 부정적인 작용 가능 * 세율↑ ⇒ 저성장 ⇒ 과세기반의 축소 * 추경이 의도하는 효과 반감 내지 소멸 [기업투자 유인↓ → 일자리 창출↓] - 오히려 세율 인하할 때 세수 증대 가능성 * Laffer 곡선 : 세율↓⇒ 유인↑ ⇒ 성장↑ * (최근 한국 경제) 명목 법인세율 인하 및 공제·감면 확대에도 법인세수는 증가
	불안정성 증대 - 유입 감소 - 유출 증가 - 해외 이전 ⇒ 국내고용↓	- 법인세율 인상 시 자본 유출로 불안정성↑ * 자본이동성 증가로 국제 조세경쟁 심화 * 특히 최근 국제금융 불안정성 증가 추세 ⇒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조세환경에 역행 - 법인세율 인상 시 해외기업 유치 감소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 증가 가능성 다분 * 국내 일자리 감소 및 저성장 침체 고착화
- 법인세율 복귀로 부자감세 정상화	- 법인세제의 소득분배 관련 영향력 미약 - 시장왜곡 효과 * 지대추구행위	- 법인세는 소득분배에 직접적인 영향력 미약 ⇒ OECD 대다수 단일세율체계 채택한 이유 - 누진 세율 강화 시 시장 왜곡 가능성 증가 * 기업성장 의욕 억제 ⇒ 지대추구행위 만연 [생산 활동보다 기득권 유지·확대 집중] - 소득분배 중시하는 오바마도 법인세는 인하 * 국제 요인이 국내 요인보다 더 큰 영향력
	- 대기업 증세는 상당수준 진척	-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 부자감세 효과 상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 ('13) 3-4% → 2-3% → ('14) 1-2% → ('15) 폐지 * 최저한세율 인상 : 과표 1천억원 초과 기업 ('12) 14% → ('13) 16% → ('14-) 17% * 연구·인력개발비 대기업 세액공제율 축소

■ 새정치연합이 추경 협력 조건으로 내세운 법인세율의 인상은 특히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유인의 감소로 인한 저성장, 자본유출 및 불안정화 등 추경효과가 상쇄될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환경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부적절

5. 정책 대안 : 법인세 공제감면제도 재정비

공제감면제도는 특정목표를 위해 한시 도입 경우에도 항구화·기득권화
- 일몰時 종료 원칙을 준수하고, 혁신형 및 고용친화형 기업 선별 지원

■ 특정 정책 목표 하에 도입된 공제·감면제도의 항구화·기득권화

- ※ 도입時 정책목표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도 제도의 존속 내지 확대
- ※ 세출예산과 연계 미흡으로 특정행위·산업·계층에 지원 중복·편중
- ※ 공제감면액 규모가 연 30조원 수준 ⇒ 재정건전성 확보에 부담 과중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공제·감면제도를 개혁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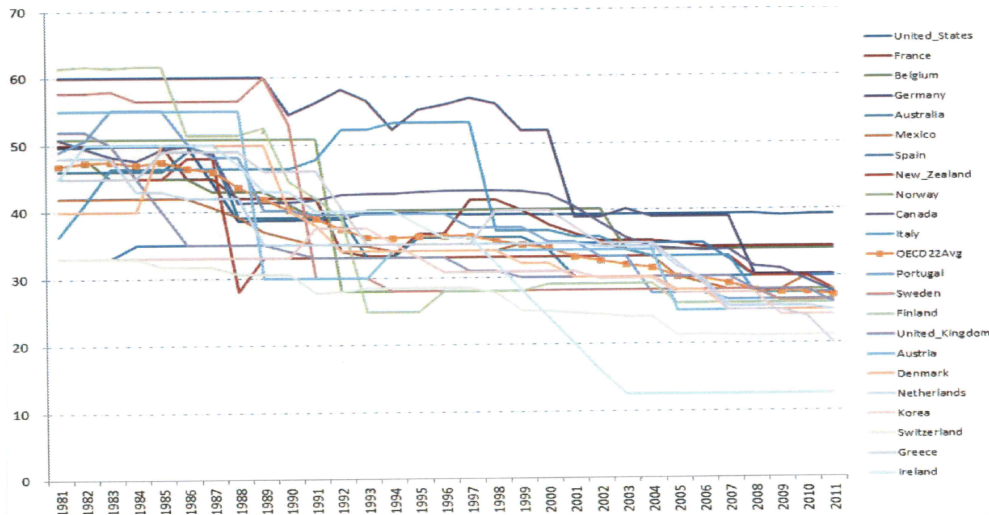
- ① 일몰도래 時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재설계한 후 도입
 - 조세감면 재설계時 정책목적, 조세지원 필요성과 효과, 세출과 중복 여부, 해외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일몰도래 1년 전부터 전문기관 등을 통한 엄밀한 성과평가 실시
 - 효율성(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형평성(경제민주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지원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정비방안을 마련
- ②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지원제도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 좀비기업 과다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구조조정 부담
⇒ 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한 후 지원을 집중
 - *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정치적 부담 또한 상당
- ③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는 기존 조세지원을 유지 또는 확대 (예: 핵심 R&D, 벤처 창업 등)
 - 중소·벤처기업 지원,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 병행
 -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친화형 지원으로 변환
 - * 고용확대 실적에 의거 지원하는 등 유인부합형 지원
 - * 투자 등 조건부 지원 (지원조건 미달성時 반납의무)

< 보론 : 국제조세경쟁과 법인세율 인하 확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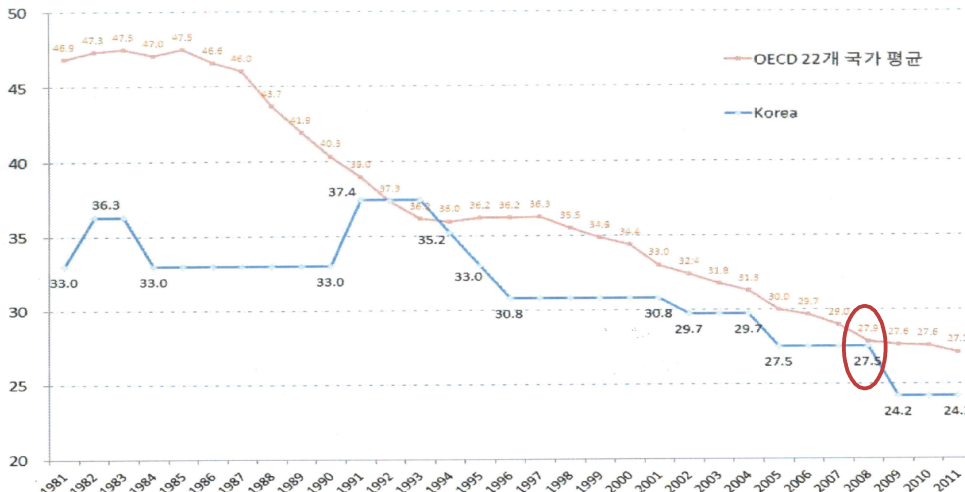
1. 법인세율의 전세계적인 수렴화 추세

1980년대 이후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면서 OECD 22개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지속적인 감소 및 수렴화 추세

< 우리나라와 OECD 22개 국가 (개별) 결합법정 법인세율 추이 : 1981-2011 >



< 우리나라와 OECD 22개 국가 (평균) 결합법정 법인세율 추이 : 1981-2011 >



출처 : 손원익-이영 (2012.06), 「법인세 세율 및 과표구간의 적정성 검토」, 기재부 용역보고서
 ※ 결합법정 법인세율 : 조정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법정세율을 결합한 전체 법인세율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일정 부분 불가피
 * 각국은 금융·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린공핍화 정책도 불사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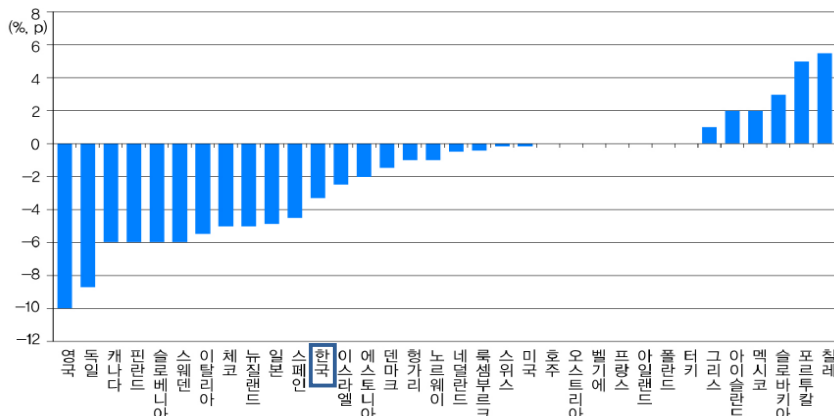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세 인하 경쟁 격화
- 일부 국가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 법인세율의 인하가 대세

< OECD 국가의 법인세율 추이 : 2007-2015 >

(단위: 개)

세율	국가	국가수
① 유지	· 프랑스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아일랜드 · 폴란드 · 네덜란드 · 터키	8
② 인하 추세	· 영국 30.0% → 28.0%(08) → 26.0%(11) → 24.0%(12) → 21.0%(14) → 20.0%(15) · 뉴질랜드 33.0% → 30.0%(08) → 28.0%(11) · 체코 24.0% → 21.0%(08) → 20.0%(09) → 19.0%(10) · 슬로베니아 23.0% → 22.0%(08) → 21.0%(09) → 20.0%(10) → 18.0%(12) → 17.0%(13) · 미국 39.26%(07) → 39.25%(08) → 39.10%(09) → 39.21%(10) → 39.19%(11) → 39.13%(12) · 스웨덴 28.0%(08) → 26.3%(09) → 22.0%(13) · 에스토니아 22.0%(07) → 21.0%(08) → 20.0%(15) · 스페인 32.5%(07) → 30.0%(08) → 28.0%(15) · 스위스 21.3%(07) → 21.15%(08) → 21.1%(13)	9
③ 초반 인하	· 독일 38.9%(07) → 30.18%(08) · 이탈리아 33.0%(07) → 27.5%(08) · 한국 27.5%(07~08) → 24.2%(09)	3
④ 최근 인하	· 일본 39.5%(07~13) → 35.6%(14) → 34.62%(15) · 핀란드 26.0%(07~11) → 24.5%(12) → 20.0%(14) · 헝가리 20.0%(07~09) → 19.0%(10) · 덴마크 25.0%(07~14) → 23.5%(15) · 노르웨이 28.0%(07~13) → 27.0%(14)	5
⑤ 초반 인하 · 최근 인상	· 캐나다 34.0% → 31.4%(08) → 31.0%(09) → 29.4%(10) → 27.6%(11) → 26.1%(12) → 26.3%(13) → 28.0%(15) · 이스라엘 29.0%(10) → 24.0%(11) → 25.0%(12) → 26.5%(14) · 룩셈부르크 29.6%(08) → 28.5%(09) → 28.8%(11) → 29.22%(13) · 그리스 25.0%(07) → 24.0%(10) → 20.0%(11) → 26.0%(13) · 아이슬란드 18.0%(07) → 15.0%(08) → 18.0%(10) → 20.0%(11)	5
⑥ 최근 인상	· 칠레 17%(07~10) → 20%(11) → 22.5%(15) · 멕시코 28%(07~09) → 30%(10) · 포르투갈 26.5%(07~10) → 28.5%(11) → 31.5%(12) → 29.5%(15) · 슬로바키아 19%(07~13) → 22%(14)	4

< OECD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 정도 비교 : 2007-2015 >



3. 해외 주요국 법인세 변천추이와 현행구조

특히 우리나라와 경합관계에 있는 주요국들의 최근 법인세 인하 추세에 유의
- 미국 등 일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법인세제는 단일세율 구조가 대세

	법인세율 변천 추이	법인세제 현행 구조	비고
미국	- ('13.7) 오바마 대통령 고용창출 정책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35%→28% * 제조업 소득 실효세율 상한 : 25%	- 8단계 누진세율 : 15%-35%	- R&D 세액공제 ↑ - 리쇼어링 정책 : U-Turn 기업에 이전비용 지원 및 세금 감면
영국	- 법인세율 인하 : 31%('98) → 20%('15)	- 누진세율 → 단일화 (20%)	- R&D 세액공제 ↑
캐나다	- 법인세율 인하 지속 : OECD 최저수준	- 현행 법인세율 15%	- 2014년도 예산안 * 납세행정부담 ↓ * 세제인센티브 ↑
프랑스	- 법인세 기본세율 인하 : * ('93) 33.33% → ('15) 28%	- 단일세율 28% * 소기업 15% 경감세율 * 대기업 3.3% 가산세	- R&D 공제범위 ↑ - 신생혁신기업은 감면기간 연장
독일	- 40%('00) → 25%('01) → 15%('08)	- '08년 이후 단일세제 (15%)	- Industry 4.0 : 제조업과 정보통신 융합 투자 장려
일본	- 2012.4월 이후 법인세율 전반적 인하 * 22%(18%)-30% ⇒ 19%(15%)-25.5% * 소법인, 3년 한시 특례세율 (4%P ↓)	- 일반법인 : 단일세율 25.5% * 중소기업 2단계 19%-25.5%	- 설비투자 R&D 공제요건 완화 - 임금·고용 확대 세제지원 강화
중국	- 법인세율 33%('04-'07) → 17%('10 이후)	- '08년 이후 보통세율 25% * 저이윤 소기업 20% (한시)	
대만	- 법인세율 25% ('07) → 17%('08-'14)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11), 「법인세 국제동향 및 기업대응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5.07),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법인세」

➡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전세계적 (특히 경쟁국) 추세에 역행
*** 특히 美 연준 금리 인상이 압박,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제자본의 이탈 촉발 가능성 등 불안정성 급증 우려**